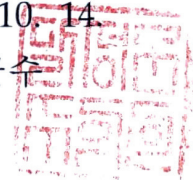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·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450
번 호	

제출일자: 2019. 10. 14

제 출 자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대여함에 있어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대여기간 변경(제7조 제1항 별표)
 - 기본 6개월 (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) → 기본 6개월 (최대 2년 연장 가능)
 - ※기존의 연속하여 대여 불가 항목 삭제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 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- 지방자치법 제 22조(조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4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(5) 입법예고 : 2019. 08. 16. ~ 2019. 09. 05.(20일간)

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·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·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육아용품의 이용료 등)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료, 대여기간 및 연체료는 [별표]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○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(제7조 관련)

구 분	내 용	비 고
이용료/1대당	6,000원	6개월 기준, 연장 시 추가납부
대여기간	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	삭제
미반납 시 연체료/1일당	400원	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 자격 없음(완납 시 가능)

○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구 분	구입 시기	배상금액
유모차 분실	1년 이하	구입가격의 90%
	1년 초과 2년 이하	구입가격의 70%
	2년 초과	구입가격의 50%
구성품 분실	불문	아래 유모차 파손·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

○ 유모차 파손·훼손 시 배상 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구 분	배상금액
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	없음
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	소요비용의 50%
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	500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7조(육아용품의 이용료 등)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료, 대여기간 및 연체료는 [별표]를 따른다. [별표] ○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 (제7조 관련)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이용료/1대당</td><td>6,000원</td><td>6개월 기준, 연장 시 추가 납부</td></tr><tr><td>대여기간</td><td>6개월,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</td><td>연속하여 대여 불가</td></tr><tr><td>미반납 시 연체료/1일당</td><td>400원</td><td>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(완납 시 가능)</td></tr></table> ○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 (제7조제2항 관련)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구입 시기</th><th>배상금액</th></tr><tr><td rowspan="4">유모차 분실</td><td>1년 이하</td><td>구입가격의 90%</td></tr><tr><td>1년 초과 2년 이하</td><td>구입가격의 70%</td></tr><tr><td>2년 초과</td><td>구입가격의 50%</td></tr><tr><td>2년 초과</td><td>구입가격의 50%</td></tr><tr><td>구성품 분실</td><td>불문</td><td>아래 유모차 파손·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</td></tr></table> ○ 유모차 파손·훼손 시 배상 기준(제7조제2항 관련)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배상금액</th></tr><tr><td>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</td><td>없음</td></tr><tr><td>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</td><td>소요비용의 50%</td></tr><tr><td>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</td><td>500원</td></tr></table>	구분	내용	비고	이용료/1대당	6,000원	6개월 기준, 연장 시 추가 납부	대여기간	6개월,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	연속하여 대여 불가	미반납 시 연체료/1일당	400원	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(완납 시 가능)	구분	구입 시기	배상금액	유모차 분실	1년 이하	구입가격의 90%	1년 초과 2년 이하	구입가격의 70%	2년 초과	구입가격의 50%	2년 초과	구입가격의 50%	구성품 분실	불문	아래 유모차 파손·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	구분	배상금액	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	없음	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	소요비용의 50%	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	500원	제7조(육아용품의 이용료 등) ① <현행과 같음> [별표] ○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 (제7조 관련)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이용료/1대당</td><td>6,000원</td><td>6개월 기준, 연장 시 추가 납부</td></tr><tr><td>대여기간</td><td>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</td><td>삭제</td></tr><tr><td>미반납 시 연체료/1일당</td><td>400원</td><td>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(완납 시 가능)</td></tr></table> ○ <현행과 같음> ○ <현행과 같음>	구분	내용	비고	이용료/1대당	6,000원	6개월 기준, 연장 시 추가 납부	대여기간	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	삭제	미반납 시 연체료/1일당	400원	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(완납 시 가능)
구분	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용료/1대당	6,000원	6개월 기준, 연장 시 추가 납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여기간	6개월,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	연속하여 대여 불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미반납 시 연체료/1일당	400원	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(완납 시 가능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구입 시기	배상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모차 분실	1년 이하	구입가격의 9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년 초과 2년 이하	구입가격의 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년 초과	구입가격의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년 초과	구입가격의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성품 분실	불문	아래 유모차 파손·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배상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	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	소요비용의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	5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용료/1대당	6,000원	6개월 기준, 연장 시 추가 납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여기간	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	삭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미반납 시 연체료/1일당	400원	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(완납 시 가능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